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3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40796 배당이의

원 고 주식회사 [redacted]

피 고 A오피스텔 점유자대표회의

변 론 종 결 2018. 1. 23.

판 결 선 고 2018. 2. 6.

주 문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. 3. 25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,461,497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3

판사 이준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3

청구원인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6. 8. 10.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[redacted]구 C 외 2 필지 지상 A 오피스텔 제[redacted]층 제[redacted]호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합니다)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자 D, E, F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(이하 ' 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합니다)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.

나. D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B [redacted]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고, 2014. 7. 3. 열린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404,627,718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.

순위	채권자	배당액	배당이유
1	피고 [redacted]구	10,385,610원	압류권자(당해세)
2	[redacted]시	13,273,370원	교부권자
3	피고 [redacted]구	1,560,430	압류권자
4	D	93,357,758	공동근저당권자
4	E	147,543,363	공동근저당권자
4	F	138,497,187	공동근저당권자
		404,617,718원	

다.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E, F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, 2014. 7. 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6202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바, 같은 법원은 2014. 7. 3. 작성한 배당표 중 F에 대한 배당액 138,497,187원을 19,500,000원으로, E에 대한 배당액 147,543,363원을 50,000,00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2015. 5. 22. 선고하였습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3

라. 이에 F, E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1943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, 2016. 1. 22.자로 항소가 기각되어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. 3. 25. 열린 위 사건의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86,178,59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.

순위	채권자	배당액	배당이유
1	E	50,000,000원	공동근저당권자
1	D	186,311,419원	공동근저당권자
1	F	19,500,000원	공동근저당권자
2	피고 [redacted]구	15,513,810원	교부권자
3	피고 G	2,501,652원	가압류권자
3	피고 [redacted]구	314,447원	압류권자
3	피고 [redacted]구	14,185	압류권자
3	피고 H	3,407,320원	가압류권자
3	피고 A 오피스텔 점유자대표회의	3,461,497원	가압류권자
3	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축은행	1,979,195원	가압류권자
3	피고 I	3,131,768원	가압류권자
		286,178,593원	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

피고 서울특별시관악구는 2014. 7. 3. 열린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전액 변제 받았고, 피고 G, 피고 H, 피고 I,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,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제3자에게 채권양도[1]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합니다.

3. 결론

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3

변경된 청구원인

1.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에 대한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. 종전에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. 따라서, 현재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만이 피고로 남았습니다.

2. 원고는 가압류권자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0072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. 7. 24.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, 2017. 5. 30.자로 확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가압류권자로 배당된 위 배당은 잘못된 것입니다.

3. 설령,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가 배당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채권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73261 부동산가압류)은 관리비 채권으로 시효가 3년이고, 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었고,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습니다.

4. 따라서, 가압류권자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잘못되었으므로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합니다. 게다가 피고 A 오피스텔점유자대표회의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,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.